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2021. 5. 13(목) 15:00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내용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속기록으로 기록·보관하며, 회의록은 「서울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됩니다.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김병기 ☎2133-6370

인권정책팀장 : 정현석 ☎6385

담당 : 김대심 ☎6389

2021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5. 13(목)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2
- 참가인원 : 총13명 (위촉직 위원 12명, 당연직 1명)
- 안 건 :
 1.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 보고
 - 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허가 보고
 - 2) 공무원 성명서 및 언론기고에 의한 차별·혐오표현 시정권고 추진 경과보고
 2.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주제선정 자문
 3.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안) 의결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10	(10')	· 참석자 인사	
15:10-16:50	(100')	1.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 보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허가 보고 2) 공무원 성명서 및 언론기고에 의한 차별·혐오표현 시정권고 추진 경과보고 2.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주제선정 자문 3.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권고(안) 의결 ※ 서면보고(4): 1차 임시회 조치결과, 서울시 인권포럼 결과보고, 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의 계획공유,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안내	사회: 인권위원장
16:50-17:00	(10')	· 마무리	

목 차

보고·자문사항

- | | |
|--|---|
| 1.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 보고
(예술진흥팀 / 인권보호팀) | 7 |
| 2.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주제선정 자문
(인권정책팀) | 9 |

심의·의결사항

- | | |
|---------------------------------------|----|
| 3.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민보장을 위한 권고안 의결 | 15 |
|---------------------------------------|----|

서 면 보 고

- | | |
|-----------------------|----|
| 1. 제1차 임시회 조치결과 보고 | 23 |
| 2. 서울시 인권포럼 결과보고 | 25 |
| 3. 광역지자체인권위협의회의 계획 공유 | 28 |
| 4.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과정 안내 | 32 |

1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 보고

(1-1)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허가 보고

〈 예술진흥팀 〉

※ 회의자료 따로 붙임

[1-2] 공무원 성명서 및 언론기고에 의한 차별·혐오표현 시정권고 추진 경과보고

〈 인권보호팀 〉

※ 회의자료 따로 붙임

〈 인권정책팀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사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파악이 필요한 대상 또는 분야
- 조사내용 :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객관적 실태파악, 문제점 도출
 - 인권계획 중 시의성, 중요성 등 고려하여 집중적 이행점검이 필요한 분야에 실태조사 할 수 있음
 - 인권이슈 고려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함
- 조사방법 : 설문조사(면접·온라인),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등 실시
- 소요예산 : 60,000천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21.6월~11월)
-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인권위원회 요청사항: 인권실태조사 주제 선정을 위한 자문

 추진계획

- 실태조사 수요조사, 주제선정 4월~5월
- 입찰공고, 용역 수행업체 선정 5월~6월
- 인권 실태조사 실시 7월~11월
- 최종보고회, 인권 실태조사 준공 11월

 인권실태조사 주제제안 현황: 9개

- 인권위원회 주제제안(3): 최현숙·김예원·임종한 위원('21.3.18 1차 임시회)
- 인권담당관 주제제안(3):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정책팀
- 타 부 서 주제제안(3): 청소년정책과, 공동주택과,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인권실태조사 주제(안)

연번	분류	제안자	주제명	필요성
1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최현숙 위원)	성소수자 시민의 서울시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하며, 성소수자 정체성을 인정받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성소수자의 서울시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2		인권위원회 (김예원 위원)	서울시 양육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양육시설의 장기시설화 및 인권상황 우려되며 입소이동에 대한 욕구조사 및 이동탈시설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3		인권위원회 (임중한 위원)	서울시 어르신돌봄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노인시설 인권 관련하여 종합적인 점검 및 조사, 전문가의 의견제시가 필요함
4	인권담당관	시민인권 보호관	서울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취약계층 참여 비정규 공공일자리와 관련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접수되는 성희롱·괴롭힘 사건이 증가하는 바 실태조사가 필요함
5		인권정책팀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인권정책 시행계획 검토결과 미흡한 분야(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3차 인권정책 수립 시 결과 반영 필요함
6		인권정책팀	서울시 1인 취약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분야(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친화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다양한 부서에 제안할 필요 있음
7	타부서	청소년정책과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른 인권보장 실태파악,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에 대한 욕구파악 등이 미비한 바 실태조사를 요청함
8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실태조사를 요청함
9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중장년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소수자를 향한 혐오표현 증가로 인권의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중장년층(전체인구의 24%)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요청함

□ 주제별 세부내용

인권위원회 제안주제

① 성소수자 시민의 서울시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 부분적합

- 필요성: 시민 중 39.4%만 ‘성소수자를 직장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¹⁾ 응답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며, 성소수자 정체성을 존중받고 市 공공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함
- 설문문항: 공공서비스의 성소수자 접근성, 성소수자 관련매뉴얼, 성소수자 인권 교육 상황 등
- 유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20)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 부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에서 법령, 정책, 판례 등 분석한바 내용 중복됨.
성소수자 전문성 있는 업체선정이 중요한데 서울시 경쟁입찰 과정 거쳐야 함.
성소수자 응답자(1,000여명)가 부족하거나 혐오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됨. 서울시 성 소수자 전담부서가 부재하여 연구결과 반영한 정책개선이 용이하지 않음.

② 서울시 양육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적합

- 필요성: 방역으로 보육원 등의 외박, 외출, 면접교섭 등 제한되고 사회로부터 격리가 장기화됨. 입소 아동·청소년이 쉽게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욕구 조사 및 아동 탈시설화 기반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함
- 유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10)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상황 실태조사」, 여성가족재단(2019), 국가인권위원회(2019),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6) 등
- 부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 조사는 10년 전 자료로 활용 어려움. 양육시설 퇴소자 대상 연구결과 있지만 입소한 아동·청소년(시설 34개, 약 1,800명) 대상인 실태조사 없음. 탈시설화는 양육시설의 존폐에 연관되므로 기관장 및 관계부서의 협조가 어려울 것임. 전문기관의 인권적인 설문조사가 필요함.

1) 서울연구원(2020), 서울시민 문화다양성 인식 시범조사

③ 서울시 어르신돌봄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적합

- **필요성:** 노인시설은 감염예방을 위해 면회·외출제한 장기화,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및 사망자 발생, 감염우려, 코호트격리 우려, 열악한 처우 등 돌봄·의료인력의 퇴사와 인력난은 노인인권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음.
- **유사연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2018) 「노인권리기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2014), 국가인권위원회(2002)
- **부서 검토의견:** 아셈센터는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을 조사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년 전 자료로 활용 어려움. 市 어르신돌봄시설(데이케어센터 191, 노인요양시설 53)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해진 인권상황을 조사한 바 없음.

인권담당관 제안주제

④ 서울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참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적합

- **필요성:** 서울시의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비정규 공공일자리 관련, 시민인권 보호관이 접수하는 성희롱·괴롭힘 사건이 증가하는 바 실태조사가 필요함.
※ 공공일자리 예시: 뉴딜일자리, 안심일자리(공공근로), 특별자활사업(노숙인 등), 장애인 공공일자리,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코로나19대응 공공일자리 등
- **유사연구:** 해당사항 없음
- **부서 검토의견:**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및 취약계층 유입을 줄이고자 청년, 중장년 대상의 비정규 공공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인권실태가 파악된 바 없음. 다양한 市 관계부서에 조사결과 반영한 정책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제3차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는 통계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⑤ 청소년 노동 실태조사: 부분적합

- **필요성:** 인권정책 기본계획 10대 중점과제로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가 선정되었으나, 관계부서(노동정책담당관)에서 청소년 노동분야는 시의성 부족 및 예산부족으로 실태조사 어려움.
※ 市 노동실태조사 현황: 감정노동자, 프리랜서, 택배종사자, 플랫폼노동자, 청소노동자, 필수노동자(교통운수, 보건의료), 취약계층노동자(인쇄, 이미용, 피부미용), 노년층 노동권

- 유사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청소년정책연구원(2019) 등
- 부서 검토의견: 국가인권위 조사는 전국조사로 市의 상황파악에 한계 있고, 관계 법률개정이 주요 내용임. 청소년노동실태, 휴일제공, 산재 보호, 유해업무 지시, 성희롱·괴롭힘 여부 등 조사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개선 및 구체절차 마련, 관계부서의 인권정책 시행계획 이행을 촉구 할 수 있을 것임.

⑥ 서울시 1인 취약가구 인권상황 실태조사: 부분적합

- 필요성: 주거불안정 및 노후준비 미흡한 1인 빈곤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고립감, 고독사가 발생함. 1인 가구 중 취약한 가구(이주민, 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등 실태조사 필요함
- 유사연구: 서울시50+재단(2020) 「서울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및 지원정책」
- 부서 검토의견: 유사연구는 특정 연령층(청년 또는 노인) 1인 가구의 생활실태, 소득, 주거정책으로 진행됨.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서울시가 타시도에 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분야로 다양한 부서에 실태조사 결과 반영한 정책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

타부서 제안주제

⑦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적합

- 필요성: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의해 인권실태조사가 격년 실시하는데 관계부서(청소년정책과) 예산수립을 하지 못한 바 실태조사 요청함.
- 유사연구: 서울시(2017, 2019)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부서 검토의견: 어린이·청소년 권리 및 인권보장 파악,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권리 욕구파악, 권리영역별 정책과제 발굴 등 조사 결과를 제4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자 함.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이 가능함. 타 인권조례상 명시된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사업수행 시 부서간의 혼선 및 과업내용에서 견해차이 예상됨.

⑧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적합**

- **필요성:**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다수 발생(입주민 갑질 등으로 인한 경비원 사망·폭행 사건 등)
- **유사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2015) 「아파트 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 **부서 검토의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가 저임금, 고용불안, 장시간 노동, 고용구조 등 보장받기 어려움. 인권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계부서(공동주택과)가 ‘노동자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요청함. 市 의무관리 대상단지(150세대 이상)와 SH공사 임대주택단지 등 2,187단지 대상으로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이 가능하리라 예상됨.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등 주택관리업자 등에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동 조례에 따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무료 법률상담지원,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 등에 지원할 수 있음.

⑨ **중장년(만 50세~65세) 인권의식 및 혐오표현 실태조사: 부분적합**

- **필요성:** 중장년층(만 50세~64세) 인구는 전체 인구 24%,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5배로 증가함. 최근 사회적 소수자 대상 혐오표현이 급증하여 인권의식 중요해짐. 50대 이상 장년층은 인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바 중장년층의 인권 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요청함
- **유사연구:** 해당사항 없음
- **부서 검토의견:** 전년도에 인권담당관에서 청년청의 예산지원을 통해 청년 혐오표현 조사를 진행하고 市 청년청 및 청년의회 결과반영 요청 완료함. ‘혐오표현’의 모호함과 법률상 규제조항 부재, 차별금지법 부재 등 상위법 없이 관계부서를 통한 정책개선 범위가 협소하리라 예상됨. 중장년층 실태조사보다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 및 문화행사 등이 효과적일 것임.

〈 위원장 및 전체 위원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안)

□ 주 문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하여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이하 “노숙인 등” 이라 함)의 주거권, 건강권, 먹을 권리, 노동할 권리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 주목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이례의 권고사항들을 중심으로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2. 서울특별시는 노숙인 등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황의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인 인권증진종합계획을 수립, 집행하기 바람

□ 권고 배경

코로나-19의 확산과 그 방역조치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일상을 통제하고 영업 등 직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종래와는 급격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자유와 권리가 위축되며 사회·경제적인 희생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노숙인 등이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하여 봉착하게 되는 인권 침해의 문제는 일반적인 어려움의 정도를 훨씬 넘어섭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1. 4. 14. <코로나 19 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러

면?>이라는 주제의 『2021 서울시 인권포럼』을 개최하여 코로나-19 재난사태에서 노숙인 등이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인권현실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제반의 정책개선사항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재난 상황에서의 비적정 거처 거주민 인권실태조사」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거리, 노숙인시설,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방용 다중이용업소(PC방, 만화방,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노숙인 등 1,014여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고 또 설문조사가 반영하지 못하는 설명자료와 정책대안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숙인 당사자, 지원기관 실무자,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다중이용업소 운영자 등 11명을 상대로 심층면접조사 및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는 관계 전문가들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실태에 관한 부가적인 설명점이나 개선안들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 실태조사의 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노숙인 등은 재난상황에서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지고 있으며, 급식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한 현저하게 나빠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노숙인진료시설인 국·공립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이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적인 것은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함으로써 생계를 비롯한 생활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상황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등 재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필요한 서울시의 지원 대책들이 노숙인들에게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가 주민등록이 타시도인 경우와 함께 정보부족이나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능력의 부족에 있다는 점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고 이유

2020. 4. UN주거권특별보고관은 “홈리스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지침”(COVID-19 Guidance Note: Protecting those living in homelessness)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코로나-19의 방역지침으로 제시되는 ‘집에 머물기’, ‘자가격리’ ‘물리적 거리두기’ 혹은 ‘손씻기’ 등과 같은 조치들은 적절한 주거시설을 확보한 사람들만의 조치일 따름이며, 존재 그 자체로 “인권 침해”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노숙인 등과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접근조차 쉽지 않은 지침들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숙인 등은 이러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기에 필요한 주거공간이나 세면시설 등 위생

시설은 물론 그날 그날의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급식시설, 코로나-9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검사·예방·치료 등을 받기 위한 의료시설 등에의 접근가능성도 극히 제한되어 거의 이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종사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취할 수 있는 일자리 또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위의 UN주거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 노숙인 등에게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하고도 우선적인 지원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그 보고서는 노숙인 등에게 안정적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 등의 방역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사생활, 상하수도/세면, 음식, 사회적 및 심리적 지원 등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합니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주소등록지의 여하에 관계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무상의 보건조치와 검사를 받을 권리도 강조하면서, 노숙인 등은 방역의 과정에서 범죄인으로 취급받거나 벌금 또는 처벌 등에 처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헌법을 비롯한 일련의 법체계도 노숙인 등에게 가장 절실한 권리인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의 주거생활을 할 권리(주거권: 헌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주거기본법 제2조 등)와 먹거리에 대한 권리(헌법 제34조제1항), 질병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권리 및 위생과 건강에 대한 권리(헌법 제36조제3항),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노동의 권리(헌법 제32조제1항) 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권리들은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큰 줄기를 이루는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 특히 헌법재판소의 잇단 결정들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획득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헌법의 보장 내지는 세계인권선언, 유엔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한의 생활에 관한 권리들은 쉽사리 부정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나 부정적 시선들이 그들에게 사회보장 서비스와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질서의 이름으로 배척하거나 배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권리들이 노숙인 등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노숙인 등이기 때문에 더욱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명한 인권의 원리를 부정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해 상황은 노숙인 등이 일반적인 서울시민보다 훨씬 심각한 고

통에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의료시설의 코로나 관련 업무로의 전용, 무료급식소의 폐쇄, 심지어 노숙인 등의 주된 거주방식인 집단시설수용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위험의 확대 등으로 노숙인 등은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극한의 생활수준마저도 포기하거나 혹은 심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 하에 모든 시민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인권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활인권을 확대하여 사회보장, 건강, 교육, 안정 등의 권리들이 최대한 실천되기를 지향하는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인권도시의 구상에 노숙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도 의당 포함됩니다. 노숙인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서울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서울시의 폭넓은 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체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서울시라는 인권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인권특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는 기존의 인권정책 내지는 사회보장체제의 평등한 집행에 더하여 인권의 주요한 사각지대들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발굴, 해소하는 보다 공격적인 인권정책, 사회보장체제를 구축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실태조사의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듯이 이런 인권의 요청에 노숙인 등의 주거권과 식량권, 위생과 건강에 관한 권리, 노동할 권리 등의 보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권고 사항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노숙인 등에 대하여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정책 혹은 조치들을 취할 것을 권고 합니다.

1. 긴급과제

1.1. 급식서비스의 확충

- 「따스한채움터」의 급식을 정상화하는 등 공공운영 급식을 이용할 수 없는 노숙인 등에게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갖추는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음식의 제공과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등 노숙인 등이 급식서비스에 접근함에 불필요한 장애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

- 노숙인 등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25개 자치구에 1개소의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 지정하는 한편,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노숙인 등이 지정병원이 아닌 의료시설에서도 1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진료시설의 지정에 있어 노숙인 등에게서 잘 나타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병원, 요양병원, 내과병원 등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에 충실한 거주공간의 발굴 및 지원

- 노숙인 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화장실과 욕실을 갖춘 숙소를 충분히 확보, 제공하여 그들이 코로나 19 감염의 위험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이러한 주거공간은 코로나-19의 사태가 극복된 연후에서 노숙인 등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그들이 주거취약계층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 단기 과제

2.1.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선

- 현재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시설이 제공되고 있으나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이 집단보호시설이 오히려 집단 감염원으로 전이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그 시설의 물리적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히 화장실, 샤워실을 개별적으로 갖춘 임시주거를 지원함으로써 집단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임시주거지원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노숙인 등에게도 서울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선(2021년, 31만원)에 맞춘 주거비를 지원하며 그 기간도 현행 기본 2개월에서 주거수준상향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노숙인 등 중에서도 여성, 장애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매입임대주택 및 지원주택 공급 확대

-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울주택공사(S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보증금 인하,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지원조건(특히 치료조건)의 완화 등의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안정적인 공공일자리 제공 방안 마련

- 노숙인 등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침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일제 일자리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한편 기간 종료후에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공공 영역을 중심으로 전일제 일자리를 최대한 발굴하여 보다 많은 노숙인 등이 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2.4. 일상적인 인권침해 감시

- 재해 상황에서 노숙인 등에 대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생활공간을 빼앗기는 등 기존의 생활방식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록 공공공간이거나 혹은 방역과 연관된 공간이라 해서 노숙인 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공간으로부터 강제퇴거를 명하거나 시설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노숙인 등이 사용하던 생활물품들을 회수하거나 사용제한을 하는 것도 재해 상황에서는 절실하고도 급박한 필요가 있지 않는 한 중단되어야 합니다.

3. 장기 과제

- 보다 장기적으로는 누구나 서울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아니하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복지정책 및 사회보장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노숙인 등의 주민등록지의 여하에 관계 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먹거리 복지, 의료 및 진료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서비스가 제공되는 체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서울시 자체적인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그 수준이 미달하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의료서비스 또한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원하는 의료시설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궁극적으로는 노숙인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상기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서 면 보 고

1

제1차 임시회 조치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1.3.18.(목) 15:00 ~ 17: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총 11명(위촉직 10, 당연직 1)

- 위촉직(10) : 한상희, 김정태, 권영빈, 최현숙, 염형국, 김수정, 김예원, 최은아, 임종한, 포포바에카테리나

- 당연직(1) : 인권담당관

※ 배석: 인권정책팀장(간사), 인권보호팀장, 인권협력팀장, 인권영향평가팀장, 시민인권보호관 등 관계 공무원

□ 주요 의견 및 조치 내역

연번	주요 의견	조치 내용
1	<p>○ 인권위원회 요구사항 제출보고</p> <p>⇒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특별대책 관련: 하반기에 재논의 및 평가하기로 함</p> <p>⇒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후속조치: 다음 회의 시 권고 여부 논의하기로 함</p> <p>⇒ 지역사회 아이돌봄 관련사업 현황: 안전4 아동공적돌봄 권고(안) 의결함</p> <p>⇒ 코로나19 상황에서 양육시설 인권관련: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필요 시 보고바람</p>	<p>⇒ 하반기 재논의(예정)</p> <p>⇒ 금일 회의 시 논의(예정)</p> <p>⇒ 권고 이행조치 기한 미도래('21.5.17) 다음 회의 시 조치결과 보고(예정)</p> <p>⇒ 금일 회의 시 인권실태조사 주제선정 논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2 참고</p>
2	<p>○ 소위원회 개최결과 공유</p> <p>⇒ 별도 조치사항 없음</p>	<p>⇒ 별도 조치사항 없음</p>
3	<p>○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지침·편람 개정에 대한 권고(안) 의결</p> <p>⇒ 원안의결</p>	<p>⇒ 권고 이행조치 기한 미도래('21.5.17) 다음 회의 시 조치결과 보고(예정)</p>

연번	주요의견	조치내용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 아동 공적 돌봄 개선을 위한 권고(안) 의결 ⇒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 이행조치 기한 미도래('21.5.17) 다음 회의 시 조치결과 보고(예정)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인권정책 시행계획 심의·자문 ⇒ 원안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 조치사항 없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권고(안) 의결 ⇒ 수정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고 이행조치 기한 미도래('21.5.17) 다음 회의 시 조치결과 보고(예정)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안건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권고이행 관련 부서 검토 보고: 다음 회의 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일 회의 시 논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1 참고

□ 인권위원회 요청사항

- 인권포럼에서 나온 발제, 토론, 제안내용에 대해 인권위원회에서 다양한 방법 및 정책자문 등으로 활용 바람

□ 행사개요

- 일 시: 2021. 4. 14(수) 14:00~16:10
- 장 소: 서울시청 본관 영상회의실(6층)
- 주 제: 「코로나19 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 주 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 참석대상: 지자체 인권위원, 관련 전문가, 활동가, 시민, 공무원 등
- 진행방법: 온라인 토론회
 - 서울시 유튜브(youtube.com/seoullive), 라이브서울 홈페이지(tv.seoul.go.kr)
- 참석결과: 약 1,800명(생방송 동시접속 190명, 유튜브 조회 1,600, 오픈채팅 25명)

□ 논의결과

○ 발제 및 토론자 의견

- 발제: 김준희(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숙인 등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주거, 급식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지정병원 폐지 및 급식제공의 다양화가 필요함.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주소기반으로 제공되어 주거취약계층은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 중앙 및 지방정부는 주택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곳(쪽방, 고시원 등)에 대한 임대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재정 확대가 필요함.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소득단절로 기존 취약계층이 대량 거리노숙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긴급복지체계를 강화하여야 함. 노숙인 시설평가지표도 노숙인의 시설보호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토론1: 로즈마리(아랫마을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지원이 시급하며, 특히 여성 노숙인은 상시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어 주거가 절실함. 자치구별로 급식지원을 확대하는 것 필요하며, 식사 시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분리와 배제가 없기 바람. 코로나19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임시 휴대전화 지급, 뉴스시청 가능하도록 노숙인 지원센터 운영방식 변경이 필요함.

－ 토론2: 김진미(열린복지디딤센터 시설장)

⇒ 이번 실태조사는 노숙인 외에 다중이용시설에서 주거불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예방적 관점의 정책 개발 시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였음. 서울시의 따스한채움터를 정식 급식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할 필요 있음. 시설 이용자는 공동급식 및 공동공간을 사용하기에 거리두기 준수가 용이하지 않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존재함. 이에 보다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 토론3: 신종철(서울특별시 자활정책팀장)

⇒ 현재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 및 적극 지원하고 있음. 주소지가 없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 제도 적용방안은 관계부서와 협의가 필요함. 임시주거 지원사업은 기존보다 연장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음. 공공임대 주택공급 확대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주택정책과, SH 공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임. 노숙인 등의 공공일자리 제공목표를 확대하였으며, 호응도 높은 반일제일자리를 추가 발굴 중임.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확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나 노력하고 있음. 공공급식 관련하여 급식단가를 인상 하였으며, 지원대상 인원을 확대함. 따스한채움터의 급식시설 전환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노숙인 급식소 추가 설치의 지역의 민원발생이 예상됨. 본 실태조사 결과반영 및 추가 연구를 통해 노숙인 복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음.

－ 토론4: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집단수용 방식이나 거리노숙인을 비가시화하는 방식은 인권적이지 않으며, 노숙인 등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 방역으로 인해 기초 생활지원, 급식, 잠자리 등에 대한 규제가 높아지면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생존권이 침해 됨. 주거지의 배제가 행정의 배제가 되고 이는 곧 기초 서비스의 배제가 되기에 일시적으로라도 홈리스 인권옹호관의 역할이 필요함.

○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

- 노숙, 쪽방 등 취약한 주거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의 방역체계로 인한 영향과 인권침해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함(한상희 인권위원장)
- 홈리스 당사자의 세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행정에서 보다 밀착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함 (최현숙 인권위원)

○ **종합토론 주요 질문(카카오톡 오픈채팅)**

- 코로나19 이후 여성 홈리스의 증가가 있는지? 여성노숙인 시설의 안전문제는?
- 노숙인의 코로나19 대량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 상황 및 사망자가 발생 여부?
- 백신접종에 노숙인 또는 주거취약계층관련 쟁점과 정부차원의 해결방안은?
- 노숙인시설 출입을 위해 코로나19 음성통보서가 필요한데 향후 규정의 완화여부는?

○ **온라인생중계 주요 의견(유튜브 댓글)**

- 노숙인의 요구에 대한 행정기관 신청접수가 보다 쉬워지고 간편하게 변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숙인 등 의료급여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숙인 지정병원제도는 노숙인이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 주소기반 정책은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숙인 뿐만 아니라 탈가정한 청소년 등 모두에게 임시거주 확충과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 이야기를 들으니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네요. 꼼꼼하게 메모하고 경청했습니다.
-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꼭 필요한 포럼이네요.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후속조치

- 보건복지부 및 市 관계부서에 인권포럼 결과 공유 및 정책반영 검토 요청 완료
- 본 포럼 주제와 관련 있는 기관(국가인권위원회, SH공사, 서울시복지재단 등) 에서 포럼자료집 및 실태조사 보고서 요청하여 발송 완료
- 광역 및 기초지자체·도서관·노숙인 시설 등 실태조사 보고서 발송 완료(151부)

3

광역시자체인권위협의회의 계획 공유

□ 인권위원회 요청사항

- 의장도시(전북)에서 정기회의('21.6.2) 개최되며 코로나19 관련 지역활동 소개(서울시 외) 및 인권정책기본법(안)(법무부) 논의 예정임을 공유드립니다

□ 회의 개요

- 일 시 : 2021. 6. 2.(수) 15:00~17:00
- 장 소 : 전북도청 종합상황실(4층)
 -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온라인 회의로 변경 가능
- 참석대상 : 40명 정도(광역시 인권위협의회 회원 및 인권업무 담당자)
 - 서울특별시 : 한상희 인권위원장, 김대심 담당자
- 주요내용
 - 코로나 19 관련 지역활동 사례 소개 및 토의
 - 협의회 운영 방향 등 기타 토의

□ 시간 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00 ~ 15:10	10'	○ 개회 및 인사말씀 - 지역별 위원장 소개	전북인권위원장
15:10 ~ 16:00	50'	○ 코로나 19 관련 지역활동 사례소개 및 토의 - 발제(15분 이내)_서울 - 사례발표(각 10분 이내)_인천, 부산, 충남 ○ 지역별 인권 현안 공유	
16:00 ~ 16:10	10'	○ 휴식	
16:10 ~ 16:55	45'	○ 인권정책기본법(안) 관련 대응방안 논의 ○ 협의회 운영 방향(규정 개정 포함) ○ 기타 사항	
16:55 ~ 17:00	5'	○ 정리 및 폐회(기념촬영)	전북인권위원장

(2021. 3월말 기준)

지자체	인권위원회			비고
	위원장	위원회 임기	위원수 (전체/민간)	
계		17개 시도	233/209	
서울	한상희	2019.3.20.~2022.3.19.(3년)	13/12	의장도시 (2017.10.~2018.10.)
부산	정귀순	2021.2.20.~2023.2.19(2년)	15/13	
대구	공석	2019.8.28.~2021.8.27.(2년)	7/3(15/14)	
인천	윤대기	2019.4.29.~2021.4.28.(2년)	12/12	
광주	홍관희	2020.12.17.~2022.12.16.(2년)	20/19	의장도시 (2018.10.~2019.10.)
대전	이경희	2021.3.8.~2023.3.7.(2년)	12/11	
울산	최민식	2019.9.~2021.9.8.(2년)	14/13	
세종	류임철	2020.10.20~2022.10.19(2년)	15/13	위원장 : 부시장
경기	홍세화	2019.10.7.~2022.10.6.(3년)	13/11	
강원	이선경	2020.11.25.~2022.11.24.(2년)	15/14	
충북	안건수	2020.11.20.~2022.11.19.(2년)	15/14	
충남	이진숙	2019.8.8.~2021.8.7.(2년)	17/16	의장도시 (2019.10.~2020.10.)
전북	정영선	2019.7.11.~2021.7.10(2년)	14/11	의장도시 (2020.10.~2021.10.)
전남	강희숙	2020.12.1.~2023.11.30.(3년)	12/11	
경북	이용근	2020.7.10.~2023.7.9(3년)	15/14	
경남	승해경	2019.12.5.~2021.12.4.(2년)	9/8	
제주	신강협	2020.7.1.~2022.6.30(2년)	15/14	의장도시 (2016~2017년)

<참고>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간담회 결과

① 개요

- 일시, 장소: ' 21. 3. 16.(화) 14:00 ~ 15:30 / 줌(Zoom) 이용 화상회의
- 주요 참석자:
 -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전문위원 등 3인
 - (지자체) 광역지자체 7개(서울시,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강원도, 대전), 기초지자체 5개(수원시, 광명시, 전주시, 도봉구, 은평구), 교육청 6개(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총 18개 지자체에서 인권보호관 및 담당자 28명 참석

② 주요 논의 내용 ※ 지자체 협의회 사전 송부 의견서(3.15) 내용 포함

○ 지자체 인권기구 설치 의무화

- 법률 없이도 이미 지자체에서 인권기구 설립·운영하고 있는바 인권기본법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주길 바람. 인권기구 설치를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경우 충남인권조례와 같이 폐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의무화 의견

○ 지자체 인권정책책임관 지정 확대·의무화, 조사·구제 권한 명시

- 인권정책책임관 지정을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기초지자체, 교육청에도 확대, 의무화해주시기 바람
- 인권보호관의 조사 권한 여부에 논란이 있어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조사·구제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 마련해주시기 바람. 세부적인 논의 필요시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실무적 소통하겠음

○ 지자체 인권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확대·의무화하되 자율성 존중

- ‘대통령 취임일부터 1년내’ NAP 수립 규정 삭제 의견. NAP는 대통령임기와 별개로 수립·시행되는 것이 일관성 제고에 도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인 기본계획과 상충될 것이 우려됨
- 근거법이 없어 지자체에서 인권행정을 하기 어려움. 인권행정 위한 기본적 근거조항만 만들어주길 희망. 계획 수립시행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바람
-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체계를 마련하며 전국화, 점진·시행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자체 관리점검, 평가는 제외하여 자율성 존중해주길 요청드립니다. 협력지원의 관점이었으면 함

○ 지자체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검토

- 지자체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근거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

○ 인권교육 관련 국가인권위와 협력 규정 명시

-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 교재개발, 강사양성, 컨설팅 등 기존 업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있음. 인권교육에 인권위의 이러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 인권(친화)도시 지정

- 지자체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 여러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변화의 동기가 되도록 인권(친화)도시 인증 및 지원에 대해 검토해주길 제안함


③ 법무부의 향후 계획

- 지자체 인권보호관 협의회 의견 검토하여 법안 수정·반영
- 지자체 요청사항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지속. 끝.


□ 인권위원회 요청사항

- 인권 리더십 과정에 참석하실 서울시 인권위원은 담당자에게 신청 바람(21.5.14 가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인권 리더십 과정 안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인권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지역 인권기구 구성원의 상호교류 등을 위해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인권리더십 과정을 기획하였습니다.
3.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관심있는 인권위원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드립니다.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인권 리더십 교육>

가. 일 시 : 2021. 5. 26.(수) ~ 2021. 5. 28(금), 비속박
나.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10층 (서울 중구 나라키움 빌딩)
다. 교육대상 : 광역시·도 자치단체 인권위원회 위원
라. 교육내용 : 인권위원의 역할, 인권위원회 운영 경험과 고민, 인권을 기반한 행정
업무,
 인권조례 현황과 과제, 사회적약자 관련 인권이슈와 동향 등

마. 신청방법
(1)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인권위원 담당자가 취합하여 공문으로 신청
(2) 인권위원이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leekh95@nhrc.go.kr)로 신청,
바. 신청기한 : 2021. 5. 14.(금)
사. 기타 협조요청
- 사이버 교육 수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 업무 담당자는 인권위원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공유해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참가 신청자를 취합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첨부한 프로그램(안)을 참고바랍니다.
* 프로그램은 감사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광역시·도 인권위원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안내
 2. 참가신청서. 끝.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인권리더십과정 안내

I | 과정 현황

- 교육대상 :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
- 교육인원 : 30명 내·외
- 교육신청 : 2021. 5. 6. (목) ~ 2021. 5. 14. (금)
 -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인권위원 담당자가 취합하여 공문으로 신청
 - 인권위원이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leekh95@nhrc.go.kr)로 신청
- 교육일정 : 2021. 5. 26. (수) ~ 2021. 5. 28. (금), 비숙박
- 교육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10층)
- 교육방식
 - 집합교육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원격방식 전환 가능)
 - 사이버 사전학습 2021. 5. 14 ~ 2021. 5. 28 (인권의 이해 - 권리편, 광역시·도

지자체

인권위원 인권리더십) 수강

※ 사이버 수업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회원 가입

II

세부 계획

○ 교육프로그램

일정	시간	프로그램	강사	비고
1일차 (5/26)	10:30 ~ 12:00	- 참가 등록 및 연수 과정 안내 참여자 와 과정 소개		진행: 이경혜
	점심시간(12:00~13:30)			
	13:30 ~ 15:30	‘인권, 삶, 사회, 국가’	한상희 교수 (서울시 인권위원장)	
	15:30 ~ 18:00	인권위원이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지자체 사례를 중심으로-		
2일차 (5/27)	09:30 ~ 12:00	인권행정과 주민의 삶	염경형 (인권담당관)	
	점심시간(12:00~13:30)			
	13:30 ~ 15:30	인권조례의 현황과 과제 -인권조례 현황과 과제 및 사례를 중심으로-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15:30 ~ 18:00	역사속의 인권 -현장탐방-	교육해설사	
3일차 (5/28)	09:30 ~ 12:00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기	홍성수 (교수)	
	점심시간(12:00~13:30)			
	13:30 ~ 15:30	나는 인권옹호자다. -인권위원의 역할-	이진숙 (충남인권위원)	
	15:30 ~ 17:00	강의평가 및 소감 나누기		진행: 이경혜